

2024년 2/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



구 미 시

2024년 2/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

의 안 번 호	
--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4. . .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관련근거

「구미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 “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「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」 제3조에 따른 소속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달에 회기가 없는 경우 분기만료일 후 최초 개최되는 회기에 보고한다.”는 규정에 따라 보고함.

2. 예비비 집행 현황

(단위 : 원)

부서명	정책	단위	세부	통계목	지출금액	지출일자
하천과	효율적인하천관리 및수변도시조성	하천 행정 관리	하천 행정 관리	배상금등	536,202,032	2024.6.5.

3. 예비비 지출 사유

- 가. 교부청산금 일부 부존재 확인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을 위한 예산 필요
- 나. 판결에 따른 연 12%의 고율이자 발생에 대한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활용하여 판결금 지급

4. 사업별 집행내역

가. 교부청산금 일부 부존재 확인소송 종결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

1) 사건개요

- 사건번호 : 대구고등법원 2023누11543(파기환송)
- 원 고 : 구미 사곡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
- 피 고 : 구미시
- 확정금액 : 금536,202,032원(소가, 소송비용, 이자 포함)
- 1심 : 교부청산금 채무는 3,534,050,553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. 라는 원고의 주장
(원고 1심소송 중 구미시에 청산금 3,957,827,600 지급)
⇒ 청구기각
- 2심 : 구미시를 상대로 과지급된 청산금 423,777,047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청구로 변경(행정소송→민사소송)
⇒ 부적합 각하
- 3심(대법원) : 파기환송

3) 최종판결

- 피고는 원고에게 423,777,047원 및 이에 대하여 2022. 4. 9.부터 2023. 6. 29. 까지는 연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소송총비용 중 10%는 원고,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

4) 판결금 지급 현황

- 지급금액 : 금536,202,032원(소가, 소송비용, 이자포함)

구 분	소 가	이 자	소 송 비 용	계
판결금	423,777,047	73,454,687	38,970,298	536,202,032

관계법령

□ 「구미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」

제3조(예비비 지출 보고) ①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「구미시의 회 위원회조례」 제3조에 따른 소속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 그 달에 회기가 없는 경우 분기만료일 후 최초 개최되는 회기에 보고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는 사용승인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부서장이 보고한다.

소 관 부 서		예산재정과
입 안 자	과 장	강 호 근
	팀 장	조 민 규
	담 당 자	석 병 훈 (480-2532)